어선 안전 조업 협의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난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 어선 안전조업협의를 위하여 중앙어선안전조업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 ·도 어선안전조업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및 충청북도 제외) 및 시 ·군 어선안전조업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내륙지 시군 제외)를 둔다.

(2) 중앙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시도 협의회는 부산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두며 시 ·군 협의회는 시장 ·군수 소속하에 둔다.

(3) 중앙협의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1)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부총리가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2) 시 ·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시 ·도 수산담당국장, 경찰국장, 지방항만관리청장, 해군 해역사령관, 해양경찰대 지구 대장, 관상대 지대장(또는 측후 소장) 방송국장, 수협도지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장이 된다.

(3) 시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되며 위원은 시군 수산담당과장, 경찰서장, 지방항만관리청 출장 소장, 측후 소장, 방송국장, 어

업협동조합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장이 된다.

(4) 시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에 위원중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2. 해난사고 미연방지와 구조에 관한 사항
3. 어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로보호의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1) 중앙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운영한다.

(2)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 운영한다.

(3)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결정사항 이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은 충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1)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수산청장, 항만청장, 치안본부장이 되며, 주무관사는 수산청장이 된다.

(2) 지방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1) 중앙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수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협의회 위원, 부처의 관계국장급으로 하여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한다.

(2) 중앙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 조정된 사항은 1주일 이내에 중앙협의회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 실무 위원회는 중앙협의회 실무위원회에 준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1) 지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하 시 ·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결과를 중앙협의회 간사 부 ·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 시군 협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